

## 2015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과 재기를 위한 「2015년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사업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5년 3월 17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가. 사업 목적

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

### 나. 사업 예산 : 총 15억원

### 다. 지원 대상

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\*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결과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

\* 진로제시컨설팅 :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□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

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\*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, 회생컨설팅 사전평가\*를 통해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

\* 업무제휴 지방법원 : 제휴법원은 재기지원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 공지

\*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: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

※ 지원제외 : '참고1'의 지원제외 대상 또는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

## 라.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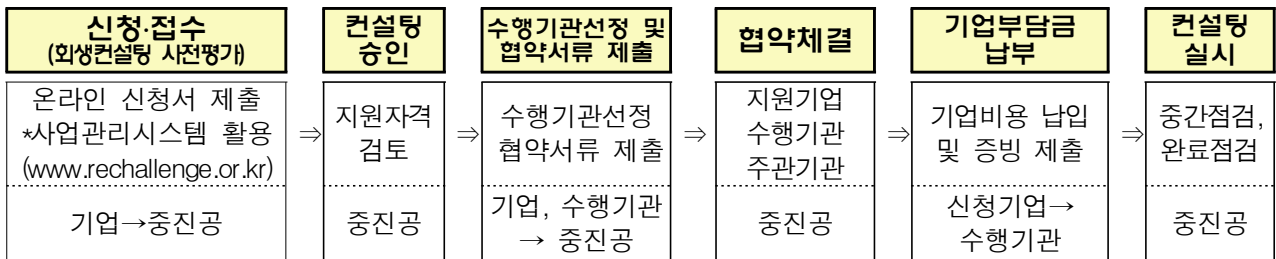
범위 :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□자문 등

비용 :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

\*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

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

## 마.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



\* 수행기관(회계법인+법무법인) 선정 :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

\* 협약체결 : 컨설팅 승인 이후 “기업”, “수행기관”, “중진공” 간 협약체결

## 바. 신청·접수 기간 : ‘15년. 공고일 ~ 예산소진 시까지

## 사. 신청방법

신청 희망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을 활용하여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
## 아. 문의처

###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

기관명	소관부서	연락처	비고
중소기업청	재도전성장과	(전화) 042-481-8964 (팩스) 042-481-6849	총괄기관
중소기업진흥공단	재도약성장처	(전화) 055-751-9633, 9635, (팩스) 055-751-9629	주관기관
		(사업신청 홈페이지) <a href="http://www.rechallenge.or.kr">www.rechallenge.or.kr</a> (문의) 055-751-9636	
콜센터		☎ 1357 (국번없음)	

\*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(055-751-9635)로 문의

- 참고 1.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업종  
2. 신청서 양식

<참고1>

## 지원제외 대상 및 제외 업종

### □ 지원 제외 대상

<p>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, 휴 폐업한 중소기업          법원 회생개시결정 및 인가 완료기업, 청산 파산 신청 및 선고가 진행중인 기업          기존 개시결정 취소 기각 철회 및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 기업        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1회이상 지원받은 기업          임 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     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 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(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)     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기업 (담보채무 10억원 미만 및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동시해당하는 개인기업은 불가)        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,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되는 경우 (법원과의 협력사업에서 제외되어, 지원대상 배제)</p>
--

### □ 지원 제외 업종

지원 대상 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)	지원 제외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)
① 제조업(C) □ 광업(B) □ 운수업(H)	-제조업(C)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中)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(33409中) -운수업(H)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(52914), 주차장 운영업(52915)
② 도매업(G) (소매업 제외)	-주류, 담배 중개업(46102中), 귀금속 중개업(46109), 주류, 담배 도매업(46331, 3),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(46463), 귀금속 도매업(46492)
③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中)
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	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 제외)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제외)
⑤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	-
⑥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	-
⑦ 건설업(F)	-
-	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~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(예시 : 농□임□어업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) 전문직 업종 제외 (예시 : 한의사, 변호사, 의사 등)

<참고2>

## 회생컨설팅 유형 및 사업비 한도액

□ 컨설팅 유형 구분

유형 ① :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‘회생컨설팅 지원’ 처방기업

- \*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인가 결정시까지 쏘주기 컨설팅 (법률자문포함)
- \* 업무제휴지방법원에서 조사위원 선임 생략 시 별도 보수 지급

유형 ② : 법원 회생신청 이후 회생컨설팅 신청 및 지원처방기업

- \* 서울중앙지법 등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사건 신청기업 해당(개시결정 전 기업)
- \*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인가 결정시까지 컨설팅 (법률자문 미포함)
- \* 일반회생사건(회생단독사건) 적용 대상일 경우 유형 ②적용 불가

업무제휴 지방법원의 회생컨설팅은 법원의 컨설턴트(회계법인) 평가결과에 따라서 회계법인보수를 조정함

- \* 상, 중, 하 등급에 따라 100%, 90%, 80% 지급

□ 컨설팅 유형별 컨설턴트(전문가) 보수

①유형 회생컨설팅 컨설턴트(전문가) 보수

-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

조사위원 보수표		컨설팅비용 구성			전문가 보수배분액		
자산구간	조사위원 보수	컨설팅비용 (A+B)	정부지원금 (A)	기업부담금 (B)	회계법인 (D)	법무대리인 (E)	계 (D+E)
50억원미만	15	25.5	22.9	2.6	16.5	9	25.5
50억원이상~80억원미만	18	30.6	27.6	3	20	10.6	30.6
80억원이상~120억원미만	27	40.5	30	10.5	26.5	14	40.5
120억원이상~200억원미만	32	48	30	18	31.2	16.8	48
200억원이상~300억원미만	39	58.5	30	28.5	38	20.5	58.5
300억원이상~500억원미만	45	67.5	30	37.5	43.9	23.6	67.5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	50	75	30	45	48.75	26.25	75

(단위 : 백만원)

\* 회생단독사건(회단사건)의 경우 총 보수의 10%를 할인함.

(유형①)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

- 조사위원이 선임이 생략되는 경우 컨설팅비용

(단위 : 백만원)

조사위원 보수표		컨설팅비용 구성			보수배분액		
자산구간	조사위원 보수	컨설팅비용 (A+B)	정부지원금 (A)	기업부담금 (B)	회계법인 (D)	법무대리인 (E)	계 (D+E)
~50억원미만	15	37.5	28	9.5	28.5	9	37.5
50억원이상 ~ 80억원미만	18	41.4	30	11.4	30.8	10.6	41.4
8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	27	48.54	30	18.54	34.54	14	48.54
120억원이상 ~ 200억원미만	32	57.54	30	27.54	40.74	16.8	57.54
200억원이상 ~ 300억원미만	39	70.2	30	40.2	49.7	20.5	70.2
30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	45	81	30	51	57.4	23.6	81
500억원이상 ~ 1000억원미만	50	90	30	60	63.75	26.25	90

\* 회생단독사건(회단사건)의 경우 총 보수의 10%를 할인함

\* 조사위원 선임 생략시 회계법인보수는 법원의 평가결과[상(100%), 중(90%), 하(80%)]반영.

(유형②) 업무제휴 지방법원 회생신청 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

(단위:백만원)

조사위원 보수표		컨설팅비용 구성			보수배분액		
자산구간	조사위원 보수	컨설팅비용 (A+B)	정부지원금 (A)	기업부담금 (B)	회계법인 (D)	법무대리인 (E)	계 (D+E)
~50억원미만	15	27.7	24.9	2.8	27.7	-	27.7
50억원이상 ~ 80억원미만	18	29.8	26.8	3	29.8	-	29.8
8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	27	33.19	29.8	3.39	33.19	-	33.19
120억원이상 ~ 200억원미만	32	39.19	30	9.19	39.19	-	39.19
200억원이상 ~ 300억원미만	39	47.8	30	17.8	47.8	-	47.8
30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	45	55.2	30	25.2	55.2	-	55.2
500억원이상 ~ 1000억원미만	50	61.31	30	31.31	61.31	-	61.31

\* 회생단독사건(회단사건)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

\* 조사위원 선임생략시 회계법인보수는 법원의 평가결과[상(100%), 중(90%), 하(80%)] 반영

□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의 참여범위

수행기관 선정

진로제시컨설팅 이후 신청기업 : 회계법인 + 법무법인 공동수행  
(컨설팅 범위 내 법률자문 포함)

업무 제휴법원 회생신청 후 회생컨설팅 신청기업 : 회계법인 단독수행

\* 법률자문은 기 계약된 법무대리인이 수행 (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)

- 회계법인 : 각 지방법원 조사위원 후보로 등록된 법인 중  
중진공에서 별도 구성□운영
- 법무대리인(또는 변호사) : 희생사건 업무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 
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구성 운영

□ 업체부담금 납부 및 협약시점

유형	기업부담금 납부시점	협약시점
기업희생컨설팅 유형①	희생신청이전 일시납	희생사건 신청이전 협약
기업희생컨설팅 유형②	희생컨설팅 협약, 법원허가 후 일시납	희생지원결정이후 협약 (개시결정일 ~ 30일 이내)

- \* 기업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 수행 불가 (협약파기)
- \* 컨설팅 진행 중 사건의 기각□폐지 등 협약해지 사유발생시 발생시점 기준으로 정산□반환
- \* 유형 변경으로 기업부담금환급 사례 발생시 : 법원과 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급□정산

□ 지원(컨설팅) 범위

유형 ① :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희생컨설팅 지원기업

추진단계	법무대리인	회계법인
개시신청단계 (개시신청~개시)	개시신청서 취합, 작성 및 제출 개시결정 관련 법률사무대리 (대표자심문, 현장검증, 보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)	개시신청서 작성지원 (회계자료,재무자료작성) 대표자 심문답변서 작성지원 (회계분야)
조사단계 (개시결정~1차집회)	법률자문 채권시부인표취합/제출 채권, 재산목록취합 제출 각종 신청서 작성 지도 1차집회자료 지원, 검토 참석	조사대응(조사위원선임시) 채권,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검토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1차관계인집회 참석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
희생계획안작성 (1차집회~ 희생계획안제출)	법률자문 희생계획안검토 및 취합제출 희생계획안 법원검토 대응	희생계획안 작성지원 검토 희생계획안 법원검토 대응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
희생계획안 인가지원 (희생계획안제출~ 2/3차관계인집회)	법률자문 관계인집회 자료작성 지원 관계인집회참석 채권자협상지원(방법지도)	관계인집회참석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 채권자협상지원(금융권 등)

유형 ② : 법원 회생신청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기업

구분	회계법인 업무범위
조사단계 (개시결정 ~ 1차집회)	채권,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지원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1차 관계인집회 참석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
회생계획안작성 (1차집회 ~ 회생계획안제출)	회생계획안 재무분야 작성지원 회생계획안 법원검토업무 대응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
회생계획안 인가지원 (회생계획안제출 ~ 2,3차관계인집회)	관계인집회 참석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채권자 협상지원 (금융기관협상)

\*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회생절차 관련한 법률 자문은 기업 자부담 수행

**【별지 제1호 서식】 참고용서식이며 실제 재기지원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 신청**

접수번호 : \_\_\_\_\_

##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신청서

기업명		대표자	
법인등록번호		생년월일	년 월 일
사업자등록번호		설립일자	년 월 일
소재지 (□본사□공장)		전화번호	( ) -
		FAX번호	( ) -
주생산품목		홈페이지	
대표자	성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직위:	전 화: (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	
	E-mail:	휴대폰: (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	
총괄책임자	성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직위:	전 화: (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	
	E-mail:	휴대폰: (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	
회생절차 개시신청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청법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</li> <li>▪ 사건번호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</li> </ul>	변호인 소속, 성명	소속 : ○○ 법무법인 성명 : 연락처 :
변호인 선임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선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선임		

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,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인(대표)

(서명 또는 인)

※ 첨부서류

-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은 기업
  - 중소기업 진로제시 처방전(결과통보용) 1부.
-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신청 이후, 회생컨설팅 희망 기업
  -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 관련서류 사본 1부.
  - 법무 대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 1부.
  -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.
  -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.
  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.

**중소기업청장,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**